

#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: 2022. 11. 10.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2. 11. 11.
- 상정일자: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 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1. 24.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토지정보과장 이 동 기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('22.4.21.시행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의 신설 및 개정 사항 반영
  - 개정 법률의 제정 목적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
  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추가 및 심의 생략 사항의 정비
  - 공유재산·물품운영 상황 공개대상 조정
  -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

-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
  -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규정
  - 공유재산 대부료·사용료의 감면범위 확대
  -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감액범위 확대
  -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의 납부방법 개선
-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자구 정비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 찬 규)

-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1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·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 및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일부 내용의 미비사항 보완과 자구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되므로 걱정한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